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95-27

제출년월일 : 95. 6.

제 출 자 : 달서구청장

(위생과)

1. 제안이유

간이급수지침(보건사회부 훈령 제632호 '91.12.30)은 공중위생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가 '93.12.27. 및 '94.8.11. 각각 개정되어 그 내용이 삭제되어 '94.11.8.부로 폐지되어, 공동급수시설 및 옹달샘(약수터) 관리업무가 상수도 사업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향후 수질관련 모든 업무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담토록 조정되었기에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근거법령

공중위생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3. 주요골자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

4. 폐지조례(안) : 따로붙임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94.5.17. 조례 제23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제정 1988·8.19 조례 제 77호]
개정 1994·5·17 조례 제29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시설의 위생적이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급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우물(음료수 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우물)을 말한다.
2. 시설단위라 함은 1개의 시설을 사용하는 부락 또는 지역단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시설로부터 급수혜택을 받는 시설단위의 주민중 가구주(또는 세대주)를 말한다.
4. 유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들로 구성된 시설단위 또는 동단위위원회를 말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설치) 시설물의 사용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물의 유지·관리
2. 급수의 위생관리
3. 기타 급수와 관련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2~3인
3. 위원 5인이상

제6조(위원의 선출) ① 위원회의 위원은 사용자가 선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감사)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감사 1인 이상을 둔다.

② 감사는 사용자가 선출한다.

③ 감사는 연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관리인의 임면) ① 위원회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관리책임자(이하 "관리인"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관리인은 위원회의 재청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면한다.

③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인에게 보수 또는 보수에 상응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

④ 관리인의 보수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관리인의 임무) ① 관리인은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등 급수시설의 운전·관리 일체를 담당한다.

②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운전·관리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표1〕의 관리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매분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별표2〕의 환경조사표에 의한 환경조사를 매월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오염원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 장 관리비의 징수·관리

제12조(관리비의 징수) ① 위원회의 관리비(전기료, 관리인 보수,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로 하는 비용)를 징수한다.

② 관리비는 위원장 책임하에 지출하고 관련 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비운영규정) ① 위원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 방법등 관리비의 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관리비운영세부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위원회는 시설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인 보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리인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관리비의 체납) 위원회는 관리비를 체납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가산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 4 장 시설물의 보수

제16조(보수의 주체) 시설물의 보수주체는 구청장과 위원회 공동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보수비의 부담 ① 구청장과 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비 부담비율은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보수비를 매 회계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비를 기금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보수비 충당을 위하여 기금을 확보코자 할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보수사업의 추진) ① 보수사업추진은 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보수사업의 필요성, 보수비등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과정을 거쳐 소요보수비를 구청장에게 지원 요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수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수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교육 · 지도

제19조 교육 구청장은 연 1회이상 위원장과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연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월 1회이상 시설의 위생관리지도원으로 하여금 환경조사등의 실시를 확인하고 필요한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 6 장 잡 칙

제21조(회계년도) 위원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22조(예산편성) 위원회의 예산은 연도 개시 1월전에 편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결산보고) 위원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년도의 예산집행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서류비치) ①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예산 및 결산서
3. 회의록
4. 관리대장
5. 비품대장
6. 시설대장(간이급수시설에 한하여 〔별표3〕의 서식에 의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장부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비치기간은 최초 작성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 7 장 보 칙

제25조(운영규칙) 동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구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 5. 17.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